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	발주부서	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V] 발주 전 [] 계약 전	확정요청번호	-
	변경 심의	[] 분석 [] 설계 [] 구현 [] 시험	변경요청번호	-
제 목		2027년 소방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업심의		
심 의 일 자		2026년 9월 4일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V] 승인 [] 불가 [] 조건부 승인		

[검토의견]

1. 과업범위 및 수행방식의 적정성
 - 유지보수 대상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H/W · S/W 12종 2,703대 및 24시간 상황관제로,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· 인력 · 사업관리 · 보안 · 품질 · 제약사항 등 8개 분야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됨
 - 유지보수요율(H/W 6%, S/W 12%)이 통상 기준 범위 내에 있고, 산출 근거(구입액 대비 요율 적용)가 명확하여 과업범위 및 산정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2. 사업기간 산정의 타당성
 - 사업기간(2027.1.1.~12.31.)은 예산 회계연도 및 24시간 무중단 운영 체계와 부합하여 당해 연도 사업으로는 적정함
3. 사업 추진방식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
 - 제한경쟁입찰(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) 방식은 사업 규모 및 성격상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43조 · 제44조에 부합하며,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어 적정함
4.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
 - 내부 직원 대상 시스템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, 법령에 근거한 사업임이 확인되어 평가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※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

2026년 9월 4일

위 원 장 진 영 (서명)

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※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

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	발주부서	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V] 발주 전 [] 계약 전	확정요청번호	-
	변경 심의	[] 분석 [] 설계 [] 구현 [] 시험	변경요청번호	-
제 목		2027년 소방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업심의		
심 의 일 자		2026년 9월 일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] 승인 [] 불가 [O] 조건부 승인		

[검토의견]

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RFP에 충분히 반영되었음.
단, '긴급구조표준시스템(A3등급)' 및 '재난현장영상전송시스템(A4등급)'은 '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'에 따라 위탁 운영자와의 서비스수준협약(SLA) 체결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임.
현재 RFP에도 SLA 체결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(예방점검, 장애대응, 재해복구, 백업체계 등)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, **품질 요구사항(QUR - 001)**에 **①SLA 체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**하고, **②유지관리를 어떤 수준(가동률, 장애대응시간, 재해복구시간, 패널티 방식 등)으로 이행할지 세부 지표를 제안**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판단됨
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

2026년 9월 4일

위 원 [illegible]

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※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

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	발주부서	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∨] **발주 전** [] **계약 전**	확정요청번호	-
	변경 심의	[] **분석** [] **설계** [] **구현** [] **시험**	변경요청번호	-
제 목		2027년 소방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업심의		
심 의 일 자		2026년 9월 8일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○] **승인** [] **불가** [] **조건부 승인**		

[검토의견]

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,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보수,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요구 사항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습니다. 또한 작성된 협력 및 기술/운영 지원, 정보 연계 등 추진체계와 소프트웨어 과업범위 및 수행방식, 계약방법,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

2026년 9월 8일

위 원 한 경 은 (서명 또는 인)

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※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

4체계단-008

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	발주부서	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V] 발주 전 [] 계약 전	확정요청번호	-
	변경 심의	[] 분석 [] 설계 [] 구현 [] 시험	변경요청번호	-
제 목		2027년 소방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업심의		
심 의 일 자		2026년 9월 4일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V] 승인 [] 불가 [] 조건부 승인		

[검토의견]

■ 과업범위 및 수행방식의 적정성 : 적정

▸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과업이 적정히 설정됨

▸ 추진체계 및 관련 조직별 역할 등 과업의 수행방식이 적정히 구성됨

■ 사업기간 산정의 타당성 : 타당

▸ 사업기간은 과업 범위 및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되어 있음

■ 사업 추진방식 및 계약방법 적정성 : 적정

▸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 및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

▸ 입찰, 낙찰, 평가 및 계약 방법이 관련 법령, 규정, 지침 등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수립됨

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: 적정

▸ 사업내용에 맞게 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
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

2026년 9월 4일

위 원 양 원 혁 (인)

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※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

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[별지 제11호서식]

과업내용 (확정/변경) 종합 심의 결과서(제25조 및 제26조 관련)

사업명		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	발주부서	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
추진 단계명	확정 심의	[∨] **발주 전** [] **계약 전**	확정요청번호	-
	변경 심의	[] **분석** [] **설계** [] **구현** [] **시험**	변경요청번호	-
제 목		2027년 소방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업심의		
심 의 일 자		2026년 9월 일	심 의 장 소	서면심의
심 의 결 과		[✓] **승인** [] **불가** [] **조건부 승인**		

[검토의견]

소방본부에 필요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 잘 정리된 것으로 판단한다. 단, H/W 및 S/W의 시스템 유지보수가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이지만, 전반적인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공격(DDoS 공격 등)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점검을 포함시켜,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공격에 대비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.
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0조,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,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.

2026년 9월 8일

위 원 홍득조 (서명 또는 인)

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귀하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※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